

#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(재특 2008-2)

## 일부개정예규안

### 1. 개정이유

- 현행 예규상 위탁보호위원, 간호위탁시설, 치료위탁시설 및 화해권고위원에 대한 비용·수당지급 기한이 없는바, 비용·수당 지급기한을 신설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회계관계공무원의 위탁보호위원, 간호위탁시설, 치료위탁시설 및 화해권고위원 비용·수당 입금기한 경과 시 지급 지연 내역 보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비용·수당의 지급을 독려함

### 2. 주요내용

- 위탁보호위원, 간호위탁시설, 치료위탁시설 및 화해권고위원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 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, 제9조제5항, 제10조제3항, 제10조의2제3항)
-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비용·수당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또는 수당을 입금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, 제9조제6항, 제10조제4항, 제10조의2제4항 신설)

-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용 또는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, 제9조제7항, 제10조제5항, 제10조의2제5항 신설)

### 3.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(재특 2008-2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(재특 2008-2)

### 일부개정예규안

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(재특 2008-2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‘법원주사보가’를 ‘법원주사보(이하 ‘법원사무관등’이라 한다)가’로 하고, 제7조제2항 중 ‘보내야 한다.’를 ‘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’로 하며,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감호비용 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.

④ 제3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위탁받는 자의 기관명,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

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.

⑦ 제6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위탁보호위원의 성명,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비용을 입금한다.

⑤ 제4항의 기간 내에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위탁받는 기관의 기관명,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비용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‘비용’을 ‘수당’으로 하고, 제10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.

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

사건번호, 화해권고위원의 성명, 화해권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②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사무관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지급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회계관계공무원이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뢰를 받은 비용 또는 수당을 입금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7조(병원 등 위탁처분에 따른 감호 비용의 국고지급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법원서기관·법원사무관·법원주사 또는 <u>법원주사보</u>가 제1항의 감호비용 청구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<u>보내야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7조(병원 등 위탁처분에 따른 감호 비용의 국고지급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u>법원주사보(이하 ‘법원사무관등’이라 한다)가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u>보내는 방식</u>-----<br/><u>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감호비용 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위탁받는 자의 기관명,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|

제9조(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④ (생략)

<신 설>

제10조(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② (생략)

<신 설>

제9조(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회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.

⑦ 제6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위탁보호위원의 성명,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

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 
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  
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  
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  
퇴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 
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  
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  
일 이내에 비용을 입금한다.

⑤ 제4항의 기간 내에 비용을  
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  
공무원은 사건번호, 위탁받는 기  
관의 기관명, 결정선고일 및 지  
급의퇴일, 미지급한 비용 상당의  
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  
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 
지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  
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  
당 청구서 및 영수서 [전산양식  
B5527]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  
출받는다.

<신 설>

제10조의2(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 
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수당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제2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  
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  
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

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.

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, 화해권고위원의 성명, 화해권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|    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| (02) 3480 - 1609 |